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09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철, 김원태, 남창진,
민병주, 박승진, 왕정순,
우형찬, 유정희, 이영실,
이원형, 한 신, 홍국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의 상위법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기타 법인·단체 등의 협력을 위해 시장의 예산수립 및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
- 또한,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제출요구 시 자료 제출의 보고를 명시하는 조항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기타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예산수립 및 확보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의2)
- 다.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,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 시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5조의2)
- 라.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별도 신설하고자 기존 규정 내용을 삭제함 (안 제7조)
- 마.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신설함 (안 제7조의2)

- 바.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세부적 회의 사항에 대해 명시함 (안 제8조)
- 사. 인용 법령,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함 (안 제3조의 2,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” 을 “(시장의 책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육성을 위하여” 를 “확충 및 지원·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 “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” 을 “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” 를 “법 제5조의3” 으로, “계획” 을 “시행계획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자료제출)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을 “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” 를 “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” 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” 를 “호선한다” 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사항” 을 “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등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박물관 ·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</u>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<u>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</u> 시장은 <u>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 ·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· ④</u> (생략)</p> <p><u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</u> 시장은 <u>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<u>확충 및 지원 · 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---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② · ③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<u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</u> -- <u>법 제5조의3</u>----- ----- <u>시행계획</u>-----.</p>

<신 설>

제6조(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.

<신 설>

제5조의2(자료제출)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호선한다.

제7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

----- 회의의 일시·
장소 및 안전 등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문서 번호

2023100500000010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김기덕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5.

회신일 : 2023.10.0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시장의 책무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(붙임 참조)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[참조] 2023년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관련 분야별 예산

(단위: 천원)

관련 조항	부서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	예산액
제3조(시장의 책무)	(일반회계)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	11,927,555
	(균형발전특별회계)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	25,460,844
	합계	37,388,399

자료 : 2023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손제승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[붙임] 2023년 서울시 사립 박물관·미술관 활성화 지원

사업목적

-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
-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2023. 12.
- 지원대상 :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·미술관, 관련단체(협회)
- 사업의 주요내용
 - 박물관·미술관 전시 및 프로그램 사업(문화 사업) 지원
 - 박물관·미술관 학예인력 지원
 - 통합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

향후 기대효과

- 박물관·미술관 사업 지원
- 학예인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
- 박물관, 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사업 지원으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

자료 : 2023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설명서